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 10. 22 선고 2019가단102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백 담당변호사 이원호

변론 종결 2019. 8. 27

판결 선고 2019. 10. 22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7지분에 관하여 2003. 9. 30.상속재산분할을
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2003. 8. 21. 처인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증여하고,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나. 망인은 2003. 9. 30. 사망하였고, 원고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.

다. 한편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.

[인정근거]○ 피고 C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)○ 피고 D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는, 망인은 생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,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지 못하였을 뿐이고, 만일 이를 인지하였더라면 이 또한 원고에게 증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,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이 상속한 각 2/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구한다.

나.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, 나아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.

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현경

별지